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영미 의원)

의안 번호	21-24
----------	-------

발의년월일: 2021. 2. .

발의자: 김영미, 강명숙, 김기석, 김진천,
이민석, 이필레, 장덕준, 채우진,
한일용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 나.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추가 규정(안 제1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3조)
- 라.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규정(안 제6조)
- 마.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 장려 방안 마련(안 제16조 신설)

3. 관계법령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조 례 안: 붙임

5. 예산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1. 2. 23. ~ 2.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주민들”을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주민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가없”을 “대가 없”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중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 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행사,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u> <u>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u> 지역주민 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 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 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 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 류사회를 위하여 <u>대가없이</u> 자 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 동의 범위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u> <u>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자원봉사</u> <u>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u> <u>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주민</u> <u>들</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 <u>대가 없</u>-----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 <u>각 호</u>-----.</p>

1. ~ 15. (생략)

제6조(자원봉사센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신설>

1. ~ 15. (현행과 같음)

제6조(자원봉사센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

제16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 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행사,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

<u>제16조</u> ~ <u>제19조</u> (생략)	<u>할 수 있다.</u> <u>제17조</u> ~ <u>제20조</u> (현행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6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 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행사,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조현욱 (☎8343)